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투자연계과제(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전략품목 및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투자연계과제』의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글로벌 유망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지정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투자연계과제 :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
- 지원규모 : 약 50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13년 1차 투자연계과제(2013.2.7 공고)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분야

- 미래유망·국산화 83개 전략품목의 기술제안 요청과제(RFP : Request for proposal)

☞ 기술제안 요청과제 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 또는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

※ 기술제안요청서(RFP)의 개발내용, 개발기간, 정부출연금은 참고사항이며,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해당사항들에 대한 적절성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됨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의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1차 시행계획공고*에서 투자연계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업체는 본 시행계획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신청 불가함
*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13.2.7)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불가
* 업력 산정기준은 본 시행계획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91249	기타객블링 및 배팅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96111	이용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96119	기타미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21	욕탕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22	마사지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912	가정용세탁업	
	56193	치킨 전문점	96913	세탁물공급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점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91	예식장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96992	접술 및 유사서비스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56219	기타 주점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56191 56220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지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의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단, 창업일이 '12.1.1 ~ '12.6.15일인 경우 최근 1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이사는 제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D 투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기본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m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연간 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6월 14일(금)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6월 14일(금) 18시까지 가능

○ 사업설명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5.29(수,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동 1706-5)
-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접수요령 및 투자심사 관련 안내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자료마당 → 사업규정자료 → 2013년이후 자료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학교, 연구소 등)이며,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⑤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Part II	공 통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④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⑤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 및 투자유치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조사(6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 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 후보과제 선정(7월)** : 대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 후보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투자연계과제는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하지 않음

- '지원후보'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민간 투자유치 자격을 부여

- **민간 투자심사(통합 사업공고일 ~ '13.10.31)**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후보'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13.10.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 념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정부출연금의 50%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통합 사업공고일('12.12.28)이후 투자기간 만료 전에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 한국벤처투자조합, ④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 ⑦ 사모투자전문회사, ⑧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R&D사업화투자협의회」에 가입된 기관

- 투자연계 지원예산 집행기준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가능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mdinvest.or.kr)을 통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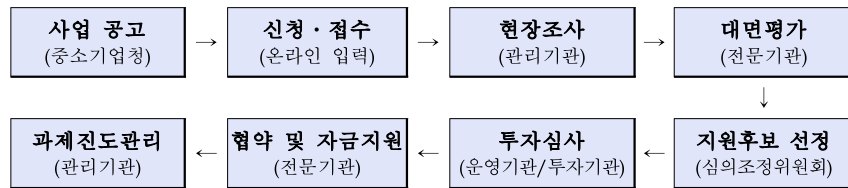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13.10.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

* 동일 기술제안서(RFP)에 2개이상 과제가 지원후보로 선정되어 해당업체 모두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면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를 협약대상 업체로 선정

** 2차 투자연계과제 지원규모는 투자심사만료일('13.10.31)에 결정되며 2차에서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업체 중, 운영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이행확인을 완료한 순으로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함

*** 2차에서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업체들은 투자심사만료일('13.10.31)일까지 투자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적격이행확인은 운영기관으로부터 11.20일(수)까지 완료하여야 함

<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지되는 기술제한 요청과제 RFP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㉞ 기업의 부도, 휴·폐업

㉟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㊱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㊲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입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042-481-4404/51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661-1357(내선 1번) 042-715-2335
운영기관 (투자연계과제만 해당)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회투자협의회)	투자심사, 투자연계 등	02-2156-2131~33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R&D사업회투자협의회(투자연계만 해당) : <http://www.rndinvest.or.kr>

<붙임>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특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p>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p>
2010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p>
2011	<p>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용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p>
2012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용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p>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제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p>	<p>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2013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 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도약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전략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혁신기업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이전기술과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글로벌협력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